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478호 2016. 11. 28(일)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320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321호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6
- 사천시 조례 제1322호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 ----- 8
- 사천시 조례 제1323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1324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사천시 조례 제1325호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사천시 조례 제1326호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사천시 조례 제1327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17
- 사천시 조례 제1328호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사천시 조례 제1329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사천시 조례 제1330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 사천시 조례 제1331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30
- 사천시 조례 제1332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 사천시 조례 제1333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 사천시 조례 제1334호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45
- 사천시 조례 제1335호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49
- 사천시 조례 제1336호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 ----- 52
- 사천시 조례 제1337호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59
- 사천시 조례 제1338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 ----- 63
- 사천시 조례 제1339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 65
- 사천시 조례 제1340호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 ----- 69
- 사천시 조례 제1341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70
- 사천시 조례 제1342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73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631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76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6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2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이·통장의 위촉 등)” 을 “(이·통장의 임명 등)” 으로 하고 본문 중 “위촉” 을 “임명” 으로 한다.

제8조 중 “사천시장” 을 “시장” 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신분증) 읍·면·동장은 이·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제목 “(이·통장의 교체)를 “(이·통장의 해임)” 으로 하고, 본문 중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4)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며, “교체” 를 “해임” 으로 하고, 본문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시정시책 추진에 반하는 행위 및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때
 5. 임기 중 당해 이·통에서 전출한 때
 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명확한 때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이·통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단체행동 금지) 이·통장은 공무원외의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는 제9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 제목 “(반장의 위촉과 정수)” 를 “(반장의 임명과 정수)” 로 하고 본문 중 “위촉” 을 “임명” 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반장의 교체)” 를 “(반장의 해임)” 으로 하고,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교체” 를 “해임” 으로 하고, 본문 외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5)

3.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시정시책 추진에 반하는 행위 및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때
5.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명확한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반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제9조제2호, 제20조제2호의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2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7)

| [별표] 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 | |
|------------------------------------|------------------|-----|
| 기관명 | 소 재 지 | 비 고 |
| 사천시 | 용현면 시청로 77 | |
| 사천읍 | 사천읍 읍내로 52 | |
| 정동면 | 정동면 상정대로 2540-39 | |
| 사남면 | 사남면 진삼로 1108 | |
| 용현면 | 용현면 진삼로 637 | |
| 축동면 | 축동면 길평1길 20 | |
| 곤양면 | 곤양면 성내공원길 11 | |
| 곤명면 | 곤명면 원전새길 64 | |
| 서포면 | 서포면 자구로 465-17 | |
| 동서동 | 수남길 102(서동) | |
| 선구동 | 각산로 22(선구동) | |
| 동서금동 | 동금로 27(동금동) | |
| 별용동 행정복지센터 | 별용길 60(별리동) | |
| 향촌동 | 향촌5길 28(향촌동) | |
| 남양동 | 임내안길 65(송포동) | |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2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회계 전출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금의
잔액 및 채납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융자금은 해당 융자금 상황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9)

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용자금의 상환, 체납처분 및 감면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10)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2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11)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1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2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
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2.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경상남도과 시의 지원금을 합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13)

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시 지원금 30만원 지급

3. 전몰군경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14)

조례

사천시 조례 제132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사천시위원회실비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15)

변상조례」”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1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2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분임회계기관”을 “분임회계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17)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2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18)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1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장기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그밖에 위촉 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20)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2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2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2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인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을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로 한다.

②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천시체육회 필요경비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2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2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설운영에 있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선동하여 관리에 지장을 주는 사람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24)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1. 기본사용료

| 구 분 시설별 | 시 기 | 사용구분 | 기 본 | 사 용 료(원) | | 비 고 | |
|---------------------------------------|---------|----------|---------|-----------------|----------------|--------|---|
| | | | | 평 일 | 휴 일 (토요일포함) | | |
|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 조기 | 체육경기 | 1회(일) | 12,000 | 15,000 | | |
| | | 체육이외 | 1회(일) | 20,000 | 30,000 | | |
| | 주간 | 체육경기 | 1회(일) | 50,000 | 60,000 | | |
| | | 체육이외 | 1회(일) | 80,000 | 120,000 | | |
| | 야간 | 체육경기 | 1회(일) | 20,000 | 25,000 | | |
| | | 체육이외 | 1회(일) | 40,000 | 50,000 | | |
| 사주체육관 | 조기 | 체육경기 | 1회(일) | 6,000 | 7,000 | | |
| | | 체육이외 | 1회(일) | 10,000 | 15,000 | | |
| | 주간 | 체육경기 | 1회(일) | 20,000 | 25,000 | | |
| | | 체육이외 | 1회(일) | 40,000 | 60,000 | | |
| | 야간 | 체육경기 | 1회(일) | 9,000 | 12,000 | | |
| | | 체육이외 | 1회(일) | 25,000 | 35,000 | | |
|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 1일 | 체육경기 | 1회(3시간) | 120,000 | 150,000 | | |
| | | 체육이외 | 1회(3시간) | 160,000 | 250,000 | | |
| 수영장 (실내) | 1일 | 체육경기 | 1회(일) | 300,000 | 500,000 | | |
| | | 체육이외 | 1회(일) | 500,000 | 800,000 | | |
| 사천·삼천포 보조 축구장, 남일대축구장, 관명축구장 | 1일 | 축구경기 | 1회(3시간) | 80,000 | 100,000 | | |
| 사동야구장 | 1일 | 체육경기 | 1회(3시간) | 30,000 | 50,000 | | |
| 궁 도 장 | 1일(1사대) | 체육경기 | 1회(일) | 20,000 | 25,000 | | |
| 인공암벽장 | 1일 | 체육경기 | 1회(일) | 20,000 | 25,000 | | |
| 풋 살 구 장 | 1일 | 체육경기 | 1회(2시간) | 20,000 | 25,000 | | |
| 테니스장 | 개인 | 인조 마사 | 체육경기 | 1회 2시간 1면당 | 7,000 | 8,000 | ※ 단 체 는 같은 동호 회나 같은 소속의 구 성원이 10명 이상인 경 우에 적용 |
| | | | " | " | 5,000 | 6,000 | |
| | 단체 | 인조 마사 | 체육경기 | 1회 2시간 / 3면당 | 20,000 | 30,000 | |
| | | | 체육경기 | 1회 2시간 / 3면당 | 10,000 | 15,000 | |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25)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

| 사용시간별 | 사 용 료 | 비 고 |
|----------|-----------------------|--------|
| 연 20회 이내 | ○ 기본사용료 × 사용 회수 | |
| 연 20회 초과 |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 0.9 | 10% 할인 |
| 연 30회 초과 |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 0.8 | 20% 할인 |

3. 연습사용료

| 시 설 별 | 구분 | 기준 | 사 용 료 | 비 고 |
|---------------|----|--------|----------|------------------|
| 체육관, 유도체육관 | 개인 | 1회 2시간 | 1,000원 |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
| | 단체 | 1회 2시간 | 1명당 800원 |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
| 종합운동장 | 단체 | 1회 2시간 | 1명당 800원 |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
| 공도장 | 개인 | 1회 2시간 | 2,000원 | 1사대 기준 |
| | 단체 | 1회 2시간 | 1명당 800원 | 1사대 기준 |
| 인공암장 | 개인 | 1회 2시간 | 1,000원 | |
| | 단체 | 1회 2시간 | 1명당 500원 | |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4. 부대시설 사용료

|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 애프터시설 | 1일 1회 (8시간내) | 20,000원 |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시 적용 |
| 전기 및 조명 | kw | 기본료+실제사용료 | 기본료 10,000원 |
| 냉·난방 | 1일 | 기본료+실제사용료 | 기본료 30,000원 |

5. 수영장 이용료

| 구 분 | 이용자 | 개인(원) | 단체(원) | 비 고 |
|------|-----------|--------|-------|---|
| 개 인 | 일반인 | 4,000 | 3,500 |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인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
| | 군인, 학생 | 3,500 | 3,000 | |
| | 어린이, 경로대상 | 3,000 | 2,500 | |
| 선수훈련 | 일반인 | 2,000 | | |
| | 군인, 학생 | 1,500 | | |
| | 어린이, 경로대상 | 1,000 | | |
| 회 원 | 일반인 | 60,000 | | |
| | 군인, 학생 | 50,000 | | |
| | 어린이, 경로대상 | 40,000 | | |
| | 체력단련실이용 | 10,000 | | |
| | 월 강습료 | 10,000 | | |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26)

| 수영복 대여료 | 수모 | 1,000 | | |
|---------|-----|-------|--|--|
| | 수경 | 1,000 | | |
| | 수영복 | 2,000 | | |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단위: 원)

| 시설별 | 월 회 원(일반인) | | 수시이용료 (일반인) | 비고 |
|-------|------------|--------|----------------|--------------|
| | 개인 | 단체 | | |
| 실내체육관 | 30,000 | 20,000 | 2,000 | 단체는 10명이상 |
| 에어로빅장 | 30,000 | 20,000 | 2,000 | " |
| 탁구장 | 30,000 | 20,000 | 2,000 | " |
| 헬스장 | 35,000 | 25,000 | 2,500 | " |
| 골프장 | 100,000 | 80,000 | 4,000 | 단체는 5명이상 |

- 이용시간 : 1명당 1회 2시간
-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 월회원 매월 기준
- 사천시 거주자 우선

7. 중계 방송료 <신설 2007.2.12>

| 종 별 | 기준 | 요 액 | 비 고 |
|----------|----|-----------|---------------------|
| 텔레비전 중계 | 1일 | 20,000원 |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
| 라디오 중계 | 1일 | 10,000원 | |
| 녹화 또는 녹음 | 1일 | 중계방송료의 반액 | |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27)

8.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신설 2007.2.12>

| 종 류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
|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 게시면적 1㎡당(월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1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1등급 :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
| | 1등급 2등급 | 8,000원 6,000원 | |
|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 에 의한 행 위 | 1일 1개 | 3,000원 | |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2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3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수도법 제3조제20호에 의한”을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29)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의 이월 등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르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30)

조례

사천시 조례 제133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31)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은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사천시 수입증지조례」에 따른다.

제4조(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중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 사용 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32)

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 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 제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33)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대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허용하는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공보 또는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34)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사업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3. 광고주의 모집방법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5.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 등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민방위 교육
2. 예비군 교육
3.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35)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 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사천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36)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37)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2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38)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39)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3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15석”을 “6석”으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연령층”을 “나이층”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40)

②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41)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

| | | | | | | |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성 별 | | 회 원 번호 | |
| 주 소 | | | | | 연락처 | (집번호) H.P | |
| 학교 및 직장명 | | | | | 연락처 | | |

작은도서관 도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작은도서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증명사진 1매
2.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제시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42)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가. 자료의 대출·반납, 신규 회원가입, 독서회원증 발급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정보는 ○○작은도서관 운영(이용)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나. 개별 수집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 목적
 - 도서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 안내 및 고지
 - 도서 장기연체 시 우편발송
-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존기간 : 가입 시 ~ 탈퇴 시
- 라.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 만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작은도서관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4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3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한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생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하게 하거나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44)

제17조제1항 중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폐기물포대”를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폐기물포대 및 공공용포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⑥ 공공용 포대는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넣어 배출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중 “10리터, 20리터로”를 “5리터, 10리터, 20리터로”한다.

제33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급을”로 하고, 제3호 중 「위촉」을 「임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45)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3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46)

3.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47)

2. 설치권장대상 : 시가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48)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응급의료 관련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49)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3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50)

제3조(관할구역)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 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운영방안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함께 복약순응도 제고를 위한 계도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의 진료 및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정확하게 복용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51)

제6조(폐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폐의약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에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 약사회장은 시장이 폐의약품 수거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점 장소에 수집된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회수하여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 약사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 약사회장과 협의하여 시기와 회수는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5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3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사천시 주차장조례」 제15조 별표 13에 따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53)

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자주식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11,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설물 허가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54)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구 분 | 주 차 요 금 | | 1일주차권 | 월 정기주차요금 | |
|-----|---------|-------|--------|----------|--------|
| | 기본(30분) | 15분초과 | | 주 간 | 야 간 |
| 소 형 | 500 | 250 | 5,000 | 50,000 | 45,000 |
| 대 형 | 1,000 | 500 | 10,000 | 100,000 | 90,000 |

— 비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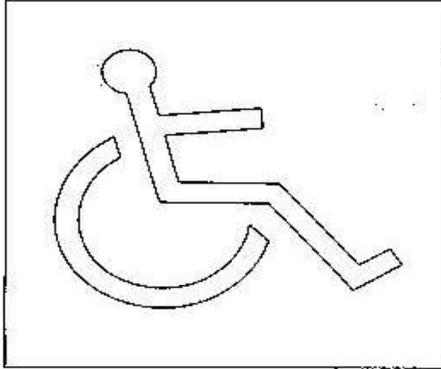
-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차장 운영시간은 매일 08:00 ~ 20:00까지로 한다.
- 한개 구획은 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점용 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소형차는 전 승용자동차와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2.5톤미만 화물자동차로 하고 대형차는 소형차 이외의 전 차종으로 한다.
- 배기량 1천cc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 및 같은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55)

[별표 11]

장애인 전용표지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40cm×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cm × 세로 32cm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20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56)

[별표 1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 시 설 물 | 설치기준 |
|---|--|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80㎡ 당 1대 |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신 설> | 시설면적 150㎡ 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 당 1대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 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50㎡ 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 당 1대 |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75㎡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 100㎡ 당 1대를 더한대수[1+{(시설면적-150 ㎡)/100㎡}] |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에 따른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 른다. |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0인 당 1대 관람장 : 정원 50인 당 1대 |
| 7.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300㎡ 당 1대(시설면적/300㎡) |
|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
|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50㎡ 당 1대(시설면적/250㎡)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57)

-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계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펍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두개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간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일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한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한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58)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지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59)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3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60)

3. “공공기관”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61)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② 시장은 사천시 건축위원회와 사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62)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사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사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6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3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59조제6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4조 중 “「주택법」 제59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64)

”으로 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65)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3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의6 제1항 각 호”를 “「주택법」 제20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66)

제5조제1항 중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상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7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5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52조에 따라 법 제42조제5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같은 법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67)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자치관리기구”를 “공동주택관리기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부터 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68)

7.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8.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69)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4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한 경우 차선평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70)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4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사용허가 및 교육)”을 “(임대 및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허가”를 “임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71)

유공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를 “(임대 취소 및 정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72)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 신청서

| | | |
|-------------------|-------|-------|
| 사 용 신청서 | 이 름 | (남/여) |
| | 주 소 | |
| | 연 락 처 | |
| 사 용 신 청 사 항 | 농기계명 | |
| | 수 량 | |
| | 사 용 료 | |
| | 사용기간 | |
| | 작업종류 | |
| | 작업면적 | |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조례 제8조)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9조)
- 농기계 작업종류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례 제12조)
-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조례 제13조)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조 례 제8조)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14조)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주소:사천시 용현면 진삼로902 홈페이지:<http://aml.scnongup.net>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7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4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사용)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고 옥외에 개인하수도의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74)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75)

[별표 2]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 업 종 | 구간(m ³) | 요율(원) | 비 고 |
|------|---------------------|-------|-----|
| 가정용 | 1~20 | 347 | |
| | 21~30 | 409 | |
| | 31 이상 | 571 | |
| 일반용 | 1~100 | 448 | |
| | 101~300 | 655 | |
| | 301이상 | 881 | |
| 대중탕용 | 1~500 | 382 | |
| | 501~1,000 | 520 | |
| | 1,001이상 | 679 | |
| 산업용 | m ³ 당 | 369 | |

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안 “물가대책위원회 의결”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76)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3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을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77)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통장의 임명과 정수 등)

① 읍·면·동장은 마을회에서 2사람 이상의 추천을 받아 책임자를 임명한다. 단, 마을회의 추천이 없거나 마을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마을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한다.

③ 공개모집의 절차와 적격자의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개모집은 14일 이상 읍·면·동의 홈페이지 및 관할구역안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2. 심사기준은 거주기간, 봉사경력, 상훈, 면접 등 자체실정에 맞게 항목을 정하여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한다.

④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이·통장의 정수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⑥ 이·통장의 정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공고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의2(이·통장 심사위원회) ① 읍·면·동장은 제4조제2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78호(7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단,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지역 시의원·기관단체장 3명, 이·통장 대표 1명 및 해당 리·통 주민대표 2명으로 한다. 이때 심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5조 중 “위촉된”을 “임명된”으로 하고, “위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를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을 “(반장의 위촉과 정수 등)”을 “(반장의 임명과 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위촉”을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단,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의”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 중 “위촉”을 각각 “임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이·통·반장은 이 규칙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보고, 이·통·반장의 정수도 이 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규정한 의한 임기까지로 한다.